

계속치료비 의료기관 직접지급 신청서(지급 방법 변경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대리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주소 또는 전자우편주소	
지급 방법 신청(변경) 내용 및 사유			

「가슴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제25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계속치료비의 의료기관 직접지급을 신청(변경)합니다.

[] 의료기관 직접지급 신청 [] 지급 방법 변경

본인은 계속치료비의 의료기관 직접지급을 위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신청 사실 및 직접지급 대상자 확인, 치료비 지급에 필요한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정보를 의료기관 직접지급을 위한 업무에 이용하며, 요양급여비용의 심사를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첨부서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신청안내

- 「가슴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치료를 받은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지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치료를 받기 전에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계속치료비 지급 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 계속치료비의 의료기관 직접지급 대상은 「가슴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치료비 중 「가슴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본인일부 부담금입니다.
- 신청서가 접수되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신청인이 동의한 범위에서 신청 사실 및 계속치료비의 의료기관 직접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며, 통보된 정보는 직접지급을 위한 대상자 확인 및 지급 업무에 이용됩니다.
- 의료기관에서 대상 진료를 받은 후 요양급여비용이 청구되면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청구·심사 및 지급 절차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할 때 「가슴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비용이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한 내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통보되어 정산됩니다. 계속치료비의 의료기관 직접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 중 계속치료비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비용은 「가슴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별도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